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4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이병진・임미애・송옥주

윤후덕 • 권칠승 • 한민수

이상식 • 민병덕 • 윤준병

조 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·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함.

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,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.

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.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 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 할 필요성이 대두됨.

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,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

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소지"를 "소지(시청가능한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의	제11조(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
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생	제작·배포 등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	⑤
입하거나 아동・청소년성착취	
물임을 알면서 이를 <u>소지</u> ・시	<u>소</u> 지(시
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	<u>청가능한 「인터넷주소자원에</u>
역에 처한다.	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
	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
	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)
	<u></u>
⑥・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